#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혜영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7908

발의연월일: 2022. 10. 25.

발 의 자: 장혜영·강은미·류호정

배진교 · 심상정 · 이은주

권인숙 · 김예지 · 이수진비

황운하 의원(10인)

#### 제안이유

현행 「스토킹처벌법」은 피해자 보호명령 및 신변안전조치에 대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체계적인 지원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또한 온라인 공간에서 다양하게 발생하는 스토킹에 대해 스토킹 상대방에게 도달한 경우에만 성립되는 등 갈수록 교묘해지는 온라인 공간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범죄신고부터 피해자 보호 지원 및 사법 공조에 이르기까지 국가의 책임이 명문화되어 있지 않아 한계가 지적되어 왔습니다.

이에 스토킹의 유형을 구체화하고 실태조사 및 교육 실시 등 국가 책임을 명확히 하며 신변안전조치, 피해자 보호명령 등을 통해 피해자 보호와 스토킹 범죄 근절의 기본 토대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 주요내용

- 가. 스토킹행위 성립 판단의 초점을 피해자 중심으로 전환하고 온라인 스토킹 등 스토킹 범죄를 세분화 및 구체화함(안 제2조).
- 나. 스토킹범죄 신고체계와 스토킹피해자 보호·지원체계 구축·운영, 스토킹범죄 예방을 위한 조사·연구 및 교육·홍보 등 스토킹범죄 방지와 피해자 보호를 위한 국가 등의 책무를 명시함(안 제2조의2 신설).
- 다. 스토킹피해자의 안전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경우 피해자와 법정 대리인, 신고자, 사법경찰관, 검사의 신청으로 긴급응급조치를 1회 에 한하여 기간 연장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제5항 단서 신설).
- 라. 불기소처분 또는 불송치결정에 따라 잠정조치 결정이 자동으로 효력을 상실해 피해자 보호에 공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관련 조항을 삭제함(안 제11조제4항 삭제).
- 마. 검사 또는 경찰서장은 피해자 또는 신고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등에는 일정 기간 동안 해당 검찰청이나 경찰서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신변안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하거나, 대상자의 주거지나 현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서 신변안전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의2 신설).
- 바. 판사는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청구에 따른 결정으로 행위자에게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등 피해자보호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의5 신설).

- 사. 스토킹범죄의 수사 또는 재판을 담당하거나 이에 관여하는 공무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피해자를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게 하 는 인적사항과 사진 등 피해자의 사생활에 관한 비밀을 공개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지 않도록 함(안 제17조의3 신설).
- 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스토킹범죄로 인한 피해자의 보호·지원과 효과적인 피해방지를 위하여 피해자지원기관에서 피해자를 지원하도록 하고, 주거등을 옮겨야 하는 경우 필요한 지원과 의료 및상담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의6 신설).
- 자. 스토킹범죄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해 스토킹범죄를 예방·방지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하도록 함(안 제17조의7 신설).
- 차. 반의사불벌죄를 삭제하고 고용관계 및 청소년 대상 스토킹 범죄 등을 가중 처벌하도록 함(안 제18조).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스토킹범죄의 처벌"을 "특정인이 상대방의 동의 없이 그 사생활 영역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접근하여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괴롭히는 행위를 방지함으로써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로, "그절차에 관한 특례와 스토킹범죄 피해자에 대한 보호절차를 규정함으로써 피해자를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함을"을 "안전을 보호하는 것을"로 한다.

제2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를 "동의"로,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를 "그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사람에게"로, "행위를"을 "행위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를"로, "상대방에게 불안감"을 "불안감"으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우편·전화·팩스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는"을 "면회나 교제등 의무 없는 일을 행할 것을 요구하는"으로 하며, 같은 호 라목 중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을 "피해자의 행동을 감시하고 있다고 짐작하게

하는 사항을 알리거나 피해자가 자신의 행동이 감시당하는 것을 알수 있는 상태에"로 하고, 같은 호 마목 중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를 "피해자의 명예를 해하는 사실을 알리거나 피해자가 자신의 명예가 훼손되고"로, "물건등을 훼손하는"을 "것을 알 수 있는 상태에 두는"으로 하며, 같은 호에 바목부터 타목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스토킹범죄로 직접적인"을 "제1호에 따른행위의 상대방 및 그 동거인, 친족, 직장동료 등 생활상 밀접한 관계에 있는 사람 중 그 행위로 인하여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로 하며, 같은 조 제4호를 삭제한다.

- 바. 전화·편지·모사전송기·컴퓨터통신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 (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자신의 의사를 전달하거나 특정한 사진·그림·문자 또는 영상을 보내는 행위
- 사.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디지털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사람의 신체를 촬영·녹화하는 행위와 이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 시·상영(이하 "유포 등"이라 한다)하는 행위
- 아. 피해자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영상물 또는 음성물을 편집·합성 또는 가공하는 행위
- 자. 피해자와 관련된 사실, 사진 또는 영상 등을 유포하는 행위

- 차.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특정한 물건, 그림 또는 사진 등을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보내거나 특정한 장소에 두는 행위
- 카.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피해 자를 위한 물건을 주문하거나 서비스를 신청하거나 제3자에게 이러한 행위를 하도록 하는 행위
- 타.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등을 훼손하거나 피해자와 가까운 관계에 있는 사람의 안전을 위협하여 자유로운 생활형성을 침해하는 행위

제1장에 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2조의2(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스토킹범죄를 방지하고 피해자를 보호·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한다.
  - 1. 스토킹범죄 신고체계의 구축·운영
  - 2. 스토킹피해자의 주거이전비 지원 등 보호·지원체계의 구축·운영
  - 3. 스토킹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을 원활히 하기 위한 관련 기관 간 협력체계의 구축·운영
  - 4. 스토킹범죄 예방을 위한 환경 개선
  - 5. 스토킹범죄 예방을 위한 조사·연구, 교육 및 홍보
  - 6. 스토킹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관계 법령의 정비와 각종 정책의 수립·시행 및 평가
  - ② 국가는 스토킹 범죄를 방지하기 위하여 국제협력의 증진과 형사

사법의 공조(共助) 강화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 제3조(스토킹행위 신고 등) ① 누구든지 스토킹을 알게 된 때에는 수 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 ② 스토킹의 신고를 받은 사법경찰관리는 피해자의 주거등 피해자가 일상적으로 활동하는 장소 및 그 인근지역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에서 즉시 신고사실을 조사하여야 한다
  - ③ 사법경찰관리는 진행 중인 스토킹행위에 대하여 신고를 받은 경우 즉시 현장에 나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1. 스토킹행위의 제지, 향후 스토킹행위의 중단 통보 및 스토킹행위 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할 경우 처벌 경고
  - 2. 스토킹행위자와 피해자의 분리 및 범죄수사
  - 3. 피해자에 대한 긴급응급조치 및 잠정조치 요청의 절차 등 안내
  - 4. 스토킹 피해 관련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로의 피해자 인도(피해자 가 동의한 경우만 해당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상대방이나"를 "상대방 또는 그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나"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상대방에 대한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을 "상대방 또는 그와 밀접한 관계이 있는 사람이나 그 주거등으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의"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범죄 중단 서면 경고
- 3.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에 대한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 4. 그 밖에 스토킹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제5조제5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피해자의 안전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경우에는 피해자, 법정대리인, 신고자, 사법경찰관, 검사의 신청으로 1회에 한하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9조제1항제2호 중 "100미터"를 "1킬로미터"로, "금지"를 "금지 또는 퇴거 명령"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그 밖에 스토킹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제11조제4항을 삭제한다.

제2장에 제11조의2부터 제11조의8까지 및 제17조의2부터 제17조의7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신변안전조치) ① 검사 또는 경찰서장은 피해자 또는 신고 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스토킹 행위가 계속될 우려가 있는 경우 또는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일정 기간 동안 해당 검찰청이나 경찰서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신변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필요한 조치(이하 "신변안전조치"라 한다)를 하게 하거나 대상자의 주거지나 현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신변안전

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경찰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즉시 신변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1. 일정 기간 동안의 신변경호
- 2. 참고인 또는 증인으로 출석·귀가 시 동행
- 3. 시간대·동선·횟수 등을 대상자의 환경에 맞춘 순찰 및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등 주거에 대한 보호
- 4. 112시스템에 대상자와 핫라인 구축
- 5. 대상자의 신원정보 변경 지원
- 6. 거주지 이전 등 피신 권고 및 관련 절차 안내·보조 실시
- 7. 그 밖에 신변안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
- ② 판사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진행 과정에서 검사에게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 ③ 피해자 또는 신고자는 판사, 검사 또는 주거지나 현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있다.
- ④ 경찰서장이 신변안전조치를 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검사에게 알려야 한다.
- ⑤ 제1항에 따른 신변안전조치의 기간,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1조의3(불이익처분의 금지) 고용주(고용주를 위하여 근로자에 관한 업무를 행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피고용자가 스토킹범죄신고를 하였

거나 피해회복절차 중에 있다는 등의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이 익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1조의4(피해자보호명령사건의 관할) ① 제11조의5에 따른 피해자보호명령사건(이하 "피해자보호명령사건"이라 한다)의 관할은 행위자의 행위지·거주지 또는 현재지 및 피해자의 거주지 또는 현재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으로 한다. 다만, 가정법원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지역에 있어서는 해당 지역의 지방법원(지원을 포함한다. 이하같다)으로 한다.
  - ② 피해자보호명령사건의 심리와 결정은 단독판사가 한다.
- 제11조의5(피해자보호명령) ① 판사는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청구에 따라결정으로 행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자보호명령을 할 수 있다.
  - 1. 피해자의 주거, 직장 등 주로 활동하는 장소에서 접근금지 또는 퇴거명령
  - 2. 피해자에 대한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 ② 제1항 각 호의 피해자보호명령은 병과할 수 있다.
  - ③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제1항에 따른 피해자보호명령의 취소 또는 그 종류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 ④ 판사는 직권 또는 제3항에 따른 신청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결정으로 해당 피해자보호명령을 취소하거나 그 종류를 변경할 수 있다.

- 제11조의6(피해자보호명령의 기간) ① 제11조의5제1항 각 호의 피해자보호명령의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그 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이나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청구에 따른 결정으로 2개월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 ② 제1항 및 제11조의5제3항에 따라 피해자보호명령의 기간을 연장하거나 그 종류를 변경하는 경우 종전의 처분기간을 합산하여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 제11조의7(임시보호명령) ① 판사는 제11조의5제1항에 따른 피해자보호명령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제11조의5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해당하는 임시보호명령을 할 수 있다.
  - ② 임시보호명령의 기간은 피해자보호명령의 결정 시까지로 한다. 다만, 판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그 기간을 제한할 수 있다.
  - ③ 임시보호명령의 취소 또는 그 종류의 변경에 대하여는 제11조의 5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피해자보호명령"은 "임시보호명령"으로 본다.
- 제11조의8(다른 법률의 준용) ① 스토킹범죄의 피해자보호명령사건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5조의5, 제55조의7부터 제55조의9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되, "가정폭력범죄"는 "스토킹범죄"로 본다.

- ② 법원 또는 수사기관이 피해자, 신고자(고소·고발을 포함한다)를 증인으로 신문하거나 조사하는 경우에는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 법」 제7조부터 제12조까지 및 제1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9조 및 제15조를 제외하고는 보복 을 당할 우려가 있음을 요하지 아니한다.
- 제17조의2(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 보호조치 강화 등) ① 법원은 제9조의 잠정조치를 받은 스토킹행위자의 이행실태를 점검하여 그 결정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집행에 따르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사실을 관할 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 검사에게 통보할 수 있다.
  - ② 수사 및 재판 절차에서 피해자의 인격이나 명예가 손상되거나 사적 비밀이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피해자를 조사 하거나 심리·재판할 때 피해자가 편안한 상태에서 진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 제17조의3(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 비밀 누설 금지) ① 스토킹범죄의 수사 또는 재판을 담당하거나 이에 관여하는 공무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피해자의 주소, 성명, 나이, 직업, 학교, 용모, 그 밖 에 피해자를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인적사항과 사진 등 또

- 는 그 피해자의 사생활에 관한 비밀을 공개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피해자의 주소, 성명, 나이, 직업, 학교, 용모, 그 밖에 피해자를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는 인적사항이나 사진 등을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신문 등 인쇄물에 싣거나「방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방송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7조의4(스토킹범죄 피해자에 대한 변호사 선임의 특례) ① 스토킹 범죄의 피해자 및 그 법정대리인은 형사절차상 입을 수 있는 피해 를 방어하고 법률적 조력을 보장하기 위하여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변호사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피해자 및 그법정대리인에 대한 조사에 참여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른 변호사는 피의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 증거보전절차, 공판준비기일 및 공판절차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있다. 이 경우 필요한 절차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정한다.
  - ④ 제1항에 따른 변호사는 증거보전 후 관계 서류나 증거물, 소송 계속 중의 관계 서류나 증거물을 열람하거나 등사할 수 있다.
  - ⑤ 제1항에 따른 변호사는 형사절차에서 피해자 및 그 법정대리인의 대리가 허용될 수 있는 모든 소송행위에 대한 포괄적인 대리권

- 을 가진다.
- ⑥ 검사는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에는 국선변호사를 선정 하여 형사절차에서 피해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다.
- 제17조의5(스토킹범죄에 대한 전담재판부) 지방법원장 또는 고등법원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스토킹범죄 전담재판부를 지정하여 스 토킹범죄에 대하여 재판하게 하여야 한다.
- 제17조의6(스토킹피해자 지원)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스토킹범 죄로 인한 피해자의 보호·지원과 효과적인 피해방지를 위하여 「가 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폭 력피해상담소 등 유관 기관(이를 "피해자지원기관"이라고 한다)에서 피해자를 지원하도록 하고, 그에 따른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 다.
  -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스토킹피해자가 주거등을 옮겨야 하는 경우 긴급생계지원, 주거지 이전 지원, 취학지원, 취업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스토킹피해자에 대하여 법률상담과 소송대리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피해자에게 보건 상담 및 지도, 치료 등 의료 및 상담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7조의7(스토킹범죄 실태조사) ① 정부는 3년마다 스토킹범죄에 대

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발표하고, 이를 스토킹범죄를 예방·방지하기 위한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과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으로 정한다.

제18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4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을 대상으로 스토킹범죄를 범한 사람은 4년 이하의 징역 또는 4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④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대상으로 스토 킹범죄를 범하거나 업무, 교제의 상대, 배우자, 동거인, 친족 등 인 적 신뢰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에 대하여 스토킹범죄를 범한 때 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⑤ 피해자에게 성적불쾌감이나 혐오감을 주거나 협박 등 위협이 있는 경우의 스토킹범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⑥ 스토킹범죄로 형의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스토킹범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① 스토킹범죄를 범하여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하게 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8 스토킹범죄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를 사망하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20조의 제목 중 "잠정조치의"를 "잠정조치 등의"로 하고, 같은 조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1조의5제1항의 피해자보호명령 또는 제11조의7제1항의 임시 보호명령이 확정된 후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스토킹행위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0조의2부터 제20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의2(불이익처분의 금지 위반죄) 제11조의3를 위반하여 피해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이익을 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위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0조의3(비밀 누설 금지 위반죄) 제17조의3에 따른 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 비밀 누설 금지 의무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0조의4(긴급응급조치의 불이행죄) 제4조제1항의 긴급응급조치를 위반하여 스토킹 상대방 또는 그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사람에게 접근 등을 한 스토킹행위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1조제1항 중 "정당한"을 "제19조제1항에 따라 수강명령 또는 이수

명령을 부과받은 후 정당한"으로, "긴급응급조치(검사가 제5조제2항 에"를 "보호관찰소의 장 또는 교정시설의 장의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 령 이행에 관한 지시에 불응하여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또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로, "긴급응급조치에 대한 사후승인을 청구하지 아니하거나 지방법원 판사가 같은 조 제3 항에 따른 승인을 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를 이행하지 아니한" 을 "경고를 받은 후 다시 정당한 사유 없이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 이행에 관한 지시에 불응한"으로, "1천만원"을 "500만원"으로 하고, 같 은 조 제2항 중 "제19조제1항에 따라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부과 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보호관찰소의 장 또는 교정시설의 장의 수 강명령 또는 이수명령 이행에 관한 지시에 불응하여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 또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 에"를 "제1항에"로, "경고를 받은 후 다시 정당한 사유 없이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 이행에 관한 지시에 불응한 사람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 태료를 부과한다"를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부과·징수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제2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고소에 관한 특례) 스토킹범죄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224조 및 「군사법원법」 제266조에도 불구하고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할 수 있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혅 했 개 정 아 제1조(목적) 이 법은 스토킹범죄 제1조(목적) -----특정인이 상 의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 대방의 동의 없이 그 사생활 례와 스토킹범죄 피해자에 대 영역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접 한 보호절차를 규정함으로써 근하여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 피해자를 보호하고 건강한 사 로 괴롭히는 행위를 방지함으 로써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회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u>자유----안전을 보호하는</u>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제2조(정의)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 1. ------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 밀접한 관계에 있는 사람에게 인,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또는 이에 준하 는 행위를-----불안감-----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 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가. · 나. (생략) 가. • 나. (현행과 같음) 다. 우편·전화·팩스 또는 다. 면회나 교제 등 의무 없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는 일을 행할 것을 요구하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 는----

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 건이나 글·말·부호·음향·그 림·영상·화상(이하 "물건 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 라.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 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 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 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
- 놓여져 있는 물건등을 훼 손하는 행위

<신 설>

- 라. 피해자의 행동을 감시하 고 있다고 짐작하게 하는 사항을 알리거나 피해자가 자신의 행동이 감시당하는 것을 알 수 있는 상태에--
- 마.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마. 피해자의 명예를 해하는 사실을 알리거나 피해자가 자신의 명예가 훼손되고------것을 알 수 있는 상태 에 두는----
  - 바. 전화·편지·모사전송기·컴 퓨터통신 또는 「정보통신 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 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 하 "정보통신망"이라 한 다)을 이용하여 지속적 또 는 반복적으로 자신의 의 사를 전달하거나 특정한 사진·그림·문자 또는 영상

을 보내는 행위 사.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신 설> 유사한 기능을 갖춘 디지 털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사람의 신체를 촬영·녹화 하는 행위와 이에 따른 촬 영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 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 연하게 전시·상영(이하 "유포 등"이라 한다)하는 행위 아. 피해자의 얼굴·신체 또는 <신 설>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 물·영상물 또는 음성물을 편집·합성 또는 가공하는 행위 <신 설> 자. 피해자와 관련된 사실, 사진 또는 영상 등을 유포 하는 행위 차.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 <신 설> 여 특정한 물건, 그림 또 는 사진 등을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보내거나 특정 한 장소에 두는 행위 <신 설> 카.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이

용하여 지속적 또는 반복

- 2. (생략)
- 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하다.

4. "피해자등"이란 피해자 및 <u>스토킹행위의 상대</u>방을 말한 다.

<신 설>

적으로 피해자를 위한 물 건을 주문하거나 서비스를 신청하거나 제3자에게 이 러한 행위를 하도록 하는 행위

- 타.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등을 훼 손하거나 피해자와 가까운 관계에 있는 사람의 안전 을 위협하여 자유로운 생 활형성을 침해하는 행위
- 2. (현행과 같음)
- 3. "피해자"란 스토킹범죄로 직 3. -----제1호에 따른 행위의 상대방 및 그 동거인. 친족, 직장동료 등 생활상 밀 접한 관계에 있는 사람 중 그 행위로 인하여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삭 제>

제2조의2(국가 등의 책무) ① 국 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스토킹범 죄를 방지하고 피해자를 보호.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1. 스토킹범죄 신고체계의 구 축·운영
- 2. 스토킹피해자의 주거이전비 지원 등 보호·지원체계의 구 축·운영
- 3. 스토킹피해자에 대한 보호· 지원을 원활히 하기 위한 관 련 기관 간 협력체계의 구축· 운영
- 4. 스토킹범죄 예방을 위한 환 경 개선
- 5. 스토킹범죄 예방을 위한 조 사·연구, 교육 및 홍보
- 6. 스토킹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관계 법령의 정비와 각 종 정책의 <u>수립·시행 및 평가</u> ② 국가는 스토킹 범죄를 방지 하기 위하여 국제협력의 증진 과 형사사법의 공조(共助) 강화 에 노력하여야 한다.
- 구든지 스토킹을 알게 된 때에 | 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여 신고를 받은 경우 즉시 현 ② 스토킹의 신고를 받은 사법 경찰관리는 피해자의 주거등

제3조(스토킹행위 신고 등에 대 제3조(스토킹행위 신고 등) ① 누 한 응급조치) 사법경찰관리는 진행 중인 스토킹행위에 대하 장에 나가 다음 각 호의 조치

를 하여야 한다.

- 1. 스토킹행위의 제지, 향후 스 토킹행위의 중단 통보 및 스 토킹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 적으로 할 경우 처벌 경고
- 2. 스토킹행위자와 피해자등의 분리 및 범죄수사
- 3. 피해자등에 대한 긴급응급조 | 스토킹행위에 대하여 신고를 치 및 잠정조치 요청의 절차 등 안내
- 4. 스토킹 피해 관련 상담소 또 는 보호시설로의 피해자등 인 도(피해자등이 동의한 경우만 해당한다)

제4조(긴급응급조치) ① 사법경찰 제4조(긴급응급조치) ① ------관은 스토킹행위 신고와 관련

피해자가 일상적으로 활동하는 장소 및 그 인근지역과 「정보 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 제1호의 정보통신망에서 즉시 신고사실을 조사하여야 한다 ③ 사법경찰관리는 진행 중인 받은 경우 즉시 현장에 나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1. 스토킹행위의 제지, 향후 스 토킹행위의 중단 통보 및 스 토킹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 적으로 할 경우 처벌 경고
  - 2. 스토킹행위자와 피해자의 분 리 및 범죄수사
  - 3. 피해자에 대한 긴급응급조치 및 잠정조치 요청의 절차 등 안내
  - 4. 스토킹 피해 관련 상담소 또 는 보호시설로의 피해자 인도 (피해자가 동의한 경우만 해 당한다)

하여 스토킹행위가 지속적 또 는 반복적으로 행하여질 우려 가 있고 스토킹범죄의 예방을 위하여 긴급을 요하는 경우 스 토킹행위자에게 직권으로 또는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이나 그 법정대리인 또는 스토킹행위를 신고한 사람의 요청에 의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 주거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 의 접근 금지
- 2. 스토킹행위의 <u>상대방에 대한</u> 2. ------상대방 또는 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신 설>

<신 설>

② (생략)

	-
	_
	_
	-
	_
<u>상</u> 대방 또는 그외	ŀ
밀접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나	_
	_
	_
	_

- 1.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이나 그 1.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범죄 중단 서면 경고
  -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 그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사 람이나 그 주거등으로부터 1 킬로미터 이내의-----
    - 3.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에 대한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 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 4. 그 밖에 스토킹 피해를 방지 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 ② (현행과 같음)

제5조(긴급응급조치의 승인 신청) 제5조(긴급응급조치의 승인 신청)

- ① ~ ④ (생 략)
- ⑤ 긴급응급조치기간은 1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단서 신설>

제9조(스토킹행위자에 대한 잠정 조치) ① 법원은 스토킹범죄의 원활한 조사·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 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스토킹행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이하 "잠정조치"라 한다)를 할 수 있다.

- 1. (생략)
- 2. 피해자나 그 주거등으로부터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3.·4. (생략) <u><신 설></u>

② ~ ⑤ (생 략) 제11조(잠정조치의 변경 등) ① 7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자의 안전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경우에는 피해자, 법정대
리인, 신고자, 사법경찰관, 검사
의 신청으로 1회에 한하여 기
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9조(스토킹행위자에 대한 잠정
조치) ①
1. (현행과 같음)
2
- <u>1킬로미터</u> 금지
또는 퇴거 명령
3. • 4. (현행과 같음)
5. 그 밖에 스토킹 피해를 방지
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11조(잠정조치의 변경 등) ①

~ ③ (생 략)

④ 잠정조치 결정(제3항에 따라 잠정조치기간을 연장하거나 그 종류를 변경하는 결정을 포함한다. 이하 제12조 및 제14조에서 같다)은 스토킹행위자에 대해 검사가 불기소처분을 한때 또는 사법경찰관이 불송치결정을 한때에 그 효력을 상실한다.

<신 설>

~ ③ (현행과 같음) <<u>삭 제></u>

제11조의2(신변안전조치) ① 검사 또는 경찰서장은 피해자 또는 신고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스 토킹 행위가 계속될 우려가 있 는 경우 또는 보복을 당할 우 려가 있는 경우에는 일정 기간 동안 해당 검찰청이나 경찰서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신변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필요한 조치(이하 "신변안전조치"라 한다)를 하게 하거나 대상자의 주거지나 현 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신변안전조치를 취하도록 요청 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 은 경찰서장은 특별한 사유가

- 없으면 즉시 신변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1. 일정 기간 동안의 신변경호
- 2. 참고인 또는 증인으로 출석·귀가 시 동행
- 3. 시간대·동선·횟수 등을 대상 자의 환경에 맞춘 순찰 및 폐 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등 주거에 대한 보호
- 4. 112시스템에 대상자와 핫라인 구축
- 5. 대상자의 신원정보 변경 지 원
- 6. 거주지 이전 등 피신 권고 및 관련 절차 안내·보조 실 신
- 7. 그 밖에 신변안전에 필요하 다고 인정되는 조치
- ② 판사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 진행 과정에서 검사에게 제1항 에 따른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 ③ 피해자 또는 신고자는 판사, 검사 또는 주거지나 현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제1항 에 따른 조치를 하여 줄 것을

<신 설>

신청할 수 있다.

④ 경찰서장이 신변안전조치를 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검 사에게 알려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신변안전조치 의 기간, 절차 등에 필요한 사 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의3(불이익처분의 금지) 고 용주(고용주를 위하여 근로자 에 관한 업무를 행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피고용자가 스토 킹범죄신고를 하였거나 피해회 복절차 중에 있다는 등의 이유 로 해고나 그 밖의 불이익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의4(피해자보호명령사건의 관할) ① 제11조의5에 따른 피 해자보호명령사건(이하 "피해 자보호명령사건"이라 한다)의 관할은 행위자의 행위지·거주 지 또는 현재지 및 피해자의 거주지 또는 현재지를 관할하 는 가정법원으로 한다. 다만, 가정법원이 설치되어 있지 아 니한 지역에 있어서는 해당 지

- 역의 지방법원(지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 ② 피해자보호명령사건의 심리와 결정은 단독판사가 한다.
- 제11조의5(피해자보호명령) ① 판사는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행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자보호명령을 할 수 있다.
  - 1. 피해자의 주거, 직장 등 주

     로 활동하는 장소에서 접근금

     지 또는 퇴거명령
  - 2. 피해자에 대한 「전기통신사 업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 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 ② 제1항 각 호의 피해자보호 명령은 병과할 수 있다.
  - ③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제1항에 따른 피해자보호명 령의 취소 또는 그 종류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 ④ 판사는 직권 또는 제3항에 따른 신청에 상당한 이유가 있

<신 설>

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결정으로 해당 피해자보호명령을 취소하거나 그 종류를 변경할 수있다.

제11조의6(피해자보호명령의 기간) ① 제11조의5제1항 각 호의 피해자보호명령의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그 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이나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청구에따른 결정으로 2개월 단위로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 및 제11조의5제3항에 따라 피해자보호명령의 기간을 연장하거나 그 종류를 변경하는 경우 종전의 처분기간을 합산하여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제11조의7(임시보호명령) ① 판사는 제11조의5제1항에 따른 피해자보호명령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제11조의5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임시보호명령을 할 수 있다.
- ② 임시보호명령의 기간은 피해자보호명령의 결정 시까지로한다. 다만, 판사는 필요하다고인정하는 경우에 그 기간을 제한할 수 있다.
- ③ 임시보호명령의 취소 또는 그 종류의 변경에 대하여는 제 11조의5제3항 및 제4항을 준용 한다. 이 경우 "피해자보호명 령"은 "임시보호명령"으로 본 다.
- 제11조의8(다른 법률의 준용) ①
  스토킹범죄의 피해자보호명령
  사건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
  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5조의5, 제55
  조의7부터 제55조의9까지의 규
  정을 준용하되, "가정폭력범죄"
  는 "스토킹범죄"로 본다.
  - ② 법원 또는 수사기관이 피해 자, 신고자(고소·고발을 포함한 다)를 증인으로 신문하거나 조 사하는 경우에는 「특정범죄신

<신 설>

고자 등 보호법」 제7조부터 제12조까지 및 제1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특정범 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9조 및 제15조를 제외하고는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음을 요하지 아니한다.

제17조의2(수사 및 재판 과정에 서 피해자 보호조치 강화 등)
① 법원은 제9조의 잠정조치를 받은 스토킹행위자의 이행실태를 점검하여 그 결정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집행에 따르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사실을 관할 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 검사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② 수사 및 재판 절차에서 피해자의 인격이나 명예가 손상되거나 사적 비밀이 침해되지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피해자를 조사하거나 심리·재판할 때 피해자가 편안한 상태에서 진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u>제17조의3(피해자의 신원과 사생</u> <u>활</u> 비밀 누설 금지) ① 스토킹

범죄의 수사 또는 재판을 담당 하거나 이에 관여하는 공무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피해자의 주소, 성명, 나이, 직 업, 학교, 용모, 그 밖에 피해자 를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인적사항과 사진 등 또는 그 피해자의 사생활에 관한 비 밀을 공개하거나 다른 사람에 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피 해자의 주소, 성명, 나이, 직업, 학교, 용모, 그 밖에 피해자를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는 인적 사항이나 사진 등을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신문 등 인쇄물에 싣거나 「방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방송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개하여 서는 아니 된다.

제17조의4(스토킹범죄 피해자에 대한 변호사 선임의 특례) ① 스토킹범죄의 피해자 및 그 법 정대리인은 형사절차상 입을 수 있는 피해를 방어하고 법률 적 조력을 보장하기 위하여 변

호사를 선임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변호사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피해자 및 그 법정대리인에 대한 조사에 참여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른 변호사는 피의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 증거보전절차, 공판준비기일 및 공판절차에 출석하여의 견을 진술할 수 있다. 이 경우필요한 절차에 관한 구체적인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변호사는 증거보전 후 관계 서류나 증거물,소송 계속 중의 관계 서류나증가물을 열람하거나 등사할수 있다.
- ⑤ 제1항에 따른 변호사는 형 사절차에서 피해자 및 그 법정 대리인의 대리가 허용될 수 있 는 모든 소송행위에 대한 포괄 적인 대리권을 가진다.
- ⑥ 검사는 피해자에게 변호사 가 없는 경우에는 국선변호사 를 선정하여 형사절차에서 피

<신 설>

해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다.
제17조의5(스토킹범죄에 대한 전 담재판부) 지방법원장 또는 고 등법원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스토킹범죄 전담재판부를 지정하여 스토킹범죄에 대하여 재판하게 하여야 한다.

제17조의6(스토킹피해자 지원)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스토킹범죄로 인한 피해자의 보호·지원과 효과적인 피해방지를 위하여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폭력 기관(이를 "피해자지원기관"이라고 한다)에서 피해자를 지원하도록하고, 그에 따른 필요한 예산을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스토킹피해자가 주거등을 옮겨 야 하는 경우 긴급생계지원, 주 거지 이전 지원, 취학지원, 취 업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

- 제18조(스토킹범죄) ①・② (생 략)
  - 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 야 한다.
-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스토킹피해자에 대하여 법률상 담과 소송대리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피해자에게 보건 상담 및 지도, 치료 등 의료 및 상담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7조의7(스토킹범죄 실태조사) ① 정부는 3년마다 스토킹범죄 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발표하고, 이를 스토 킹범죄를 예방·방지하기 위한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 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과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 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제18조(스토킹범죄) ①·② (현행 과 같음)
- ③ 제1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 ③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 는 사람을 대상으로 스토킹범 죄를 범한 사람은 4년 이하의 징역 또는 4천만원 이하의 벌

<신 설>

<신 설>

<신 설>

금에 처한다.

- ④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 1호에 따른 청소년을 대상으로 스토킹범죄를 범하거나 업무, 교제의 상대, 배우자, 동거인, 친족 등 인적 신뢰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에 대하여 스토킹범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법금에 처한다.
- ⑤ 피해자에게 성적불쾌감이나 혐오감을 주거나 협박 등 위협 이 있는 경우의 스토킹범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⑥ 스토킹범죄로 형의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스토킹범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 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① 스토킹범죄를 범하여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하여위험을 발생하게 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0조(<u>잠정조치의</u> 불이행죄) (생략)

<u><신</u>설>

<신 설>

<신 설>

 ⑧ 스토킹범죄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를 사망하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20조(<u>잠정조치 등의</u> 불이행죄)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 음)

② 제11조의5제1항의 피해자보호명령 또는 제11조의7제1항의 임시보호명령이 확정된 후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스토킹행위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0조의2(불이익처분의 금지 위 반죄) 제11조의3를 위반하여 피해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이익을 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 금에 처한다.

제20조의3(비밀 누설 금지 위반 죄) 제17조의3에 따른 피해자 의 신원과 사생활 비밀 누설 금지 의무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 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1조(과태료) ① 정당한 사유 없이 긴급응급조치(검사가 제5 조제2항에 따른 긴급응급조치에 대한 사후승인을 청구하지 아니하거나 지방법원 판사가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승인을 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u>제19조제1항에 따라 수강명</u> <u>령 또는 이수명령을 부과받은</u> 후 정당한 사유 없이 보호관찰

제20조의4(긴급응급조치의 불이 행죄) 제4조제1항의 긴급응급 조치를 위반하여 스토킹 상대 방 또는 그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사람에게 접근 등을 한 스토킹행위자는 1년 이하의 징 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한다.

② <u>제1항에----</u>과태료는 대 <u>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u>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부과·징 소의 장 또는 교정시설의 장의 수한다.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 이행 에 관한 지시에 불응하여 「보 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 또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 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고를 받은 후 다시 정당한 사유 없 이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 이 행에 관한 지시에 불응한 사람 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를 부과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 | <삭 제> 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 이 부과·징수한다.

<신 설>

제22조(고소에 관한 특례) 스토킹 범죄에 대하여는 「형사소송 법」 제224조 및 「군사법원 법」 제266조에도 불구하고 자 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할 수 있다.